

202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「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및 「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202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3.

인 천 광 역 시 장

i

사업목적

-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,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❖ ‘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’이란?

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에 지정된 기업(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)

❖ ‘사회적기업’이란?

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(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)

2

사업개요

- 사업명 : 「2026년도 제2차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」
-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3년
 - * 단,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,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,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기간 만큼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서 제외
- 지원내용
 -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

❖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: 월 50~90만원까지, 예비·인증 구분없이(3년간)

 -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
 -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

*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등급 “우수” 이상 예외적 지원
 - 이차보전금 지원
 - 전문교육, 컨설팅 참여
 -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
 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지원 등

3

신청자격

- 신청자격 :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(①~⑥)을 모두 갖춘 법인·단체
 - 단,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
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

- ❖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탈락시점(공고일)부터 1년간(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) 신청제한
- ❖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·취소되거나,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·취소·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 - *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

- ▶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
- ▶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
- ▶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
- ▶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, 사업내용, 임원·근로자 등 구성원,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

❖ **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「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」 신청불가**

- ❖ 신청기업의 대표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
- ❖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(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,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)되어 부정수금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.

① 주된 사무소(본점)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법인·단체로서,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
-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
-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-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 - 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(어)조합법인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(어)업회사법인 등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·미술관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

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(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)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.
 - *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(실적기간 : 3개월)
- 단,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*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(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 업무지침 준용)
 - *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,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
 - *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: 4대보험 가입자 명부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급여이체내역, 급여명세서 등

□ 사업계획서 판단기준

- ❖ 사회서비스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 -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일 것
- ❖ 일자리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
 -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일 것
 -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
 - *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, 주 15시간 이상 근무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
- ❖ 지역사회공헌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
 - (가)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
 - :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(지역취약계층)의 비율이 20%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일 것
 - (나)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
 - 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
 - (다)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
 - :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, 마케팅,

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,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

- ❖ 혼합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 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일 것
- ❖ 기타(창의·혁신)형 :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

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

-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 - *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,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,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
- 단,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
 - *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
- 사업기반(사업장, 근로자 등)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제외 가능

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(정관 등에 기재)
-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2/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
 - * 정관 등은 ‘공증’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
-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

□ 정관 관련 세부 요건

- ❖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 회사법인, 일반 협동조합,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(단, 보건 의료사업 제외)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가. 상법에 다른 회사·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 -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(임금인상, 복리후생비, 성과급 등)
 -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
 -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
- 나.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.
- 다.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.
 -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.
 -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.
- *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.

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, 직업안정법과 신청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

□ 노동관계법령 관련 세부 요건

- ❖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
- ❖ 적용기준 :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(위반사항 해소 포함)로 판단
 - * 예시('22.4.1. 공고) : 지정신청 기업이 '22.2.20.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(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)
 - * 예시('22.4.1. 공고) : 지정신청 기업이 '22.1.20.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
 - *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

-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
-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

< 조직형태 심사사항 >

- ❖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.
 - 조직의 부서·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
- ❖ 모법인으로부터 분리·독립한 기업일 경우,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.
- ❖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
 -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
 -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

-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

<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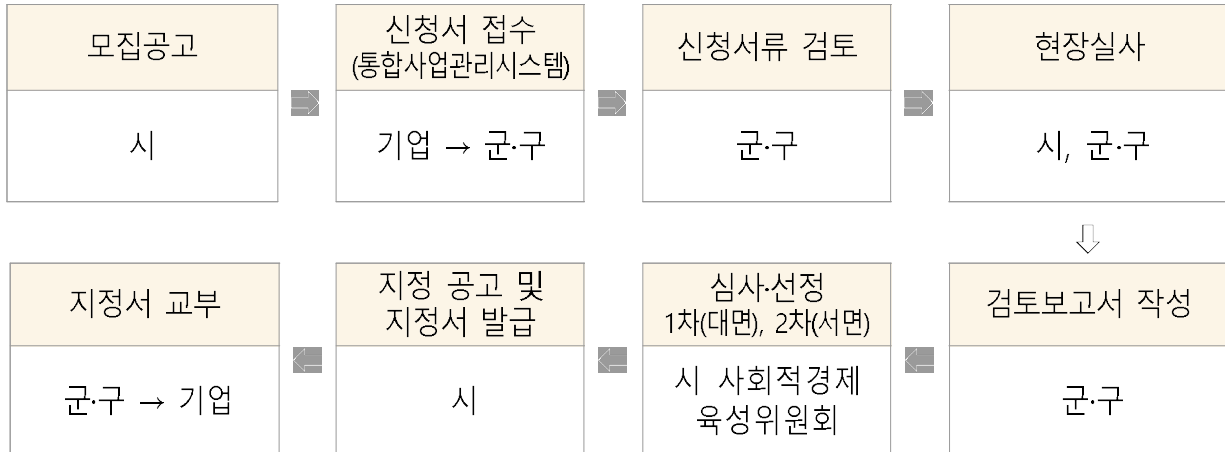
- ❖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
- ❖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,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“주된 목적”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

-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
- 향후 지속적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여부 등
- ※ 이밖에 지정요건, 심사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「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(지정)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에 따름

5

지정절차

○ 지정절차



※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: 상담 및 컨설팅, 현장실사 등 지정업무 지원

○ 결과통보 :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소재지 관할 군·구에 통보

6

접수기간 및 방법

○ 접수기간 : 2026. 8. 3.(월) 09:00~8. 21.(금) 18:00 <18일간>

○ 접수처 : 소재지 관할 군·구 (사회적기업 담당부서)

※ 신청기업은 반드시 **군·구 담당자와 신청서류 확인 등에 대한 상담 후 신청 접수**

○ 접수방법 : “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” (www.seis.or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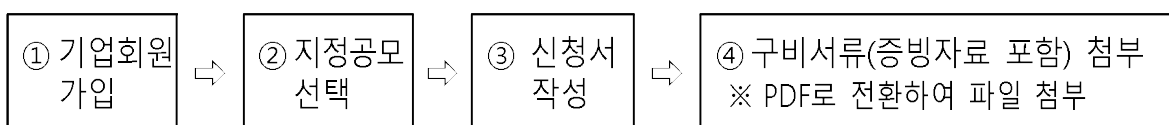
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접수

※ 신청서류는 **PDF 파일 전환 후 업로드**

-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사전 입력완료 요망(전산장애 유의)

※ “임시저장”은 최종제출이 아니며, 신청기간 내 “제출” 완료된 접수만 인정처리

○ 시스템 등록 절차



※ 신청방법 및 시스템문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 ☎ 1661-4006

- 일 시 : 2026. 8. 6.(목) 15:00~18:00
- 장 소 :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(JST 13층 세미나실)
(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)
- 참석대상 :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희망기업 등
- 주요내용 : 지정요건 및 재정지원 등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전반,
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등
- 문 의 :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☎ 032-725-3305, 9
- 신청방법 : QR코드 참조(7문항 체크 후 '제출' 클릭) ➤



1.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<별지 제1호서식>
2.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<별지 제2호서식>
3.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*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법인 등에 한함),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(지점이 있는 경우) 등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제출
4.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실적이 있는 경우)
 - *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 <별지 제2호의 2~6서식> 및 구비서류
5.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(해당 기업만) <별지 제2호의7서식>
 - *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,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, 4대 보험 완납증명서, 근로계약서 사본, 급여대장 및 급여 계좌이체 내역
 - * 취약계층 증빙서류(해당 시), 주민등록등본(지정유형이 '지역사회공헌형 ㉔' 경우)
6.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기업만)
 - * 실적기간 :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(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)
 - * 가결산 재무제표 등은 외부 전문기관(회계사·세무사 등)이 확인을 받아 입증 가능한 회계자료일 것(기타, 매출 계정별원장 등)
7. 공증받은 정관·규약(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)
 - * 정관·규약은 이익 재분배 내용(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)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, 정관 등은 '공증' 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

- * 사단·재단법인, 사회적협동조합,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·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공문 제출 가능
- + 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자조합,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 「협동조합기본법」 협동조합, 「민법」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
8.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(기존실적이 있는 기업만) <별지 제2회의11서식>
9.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<별지 제2회의8서식>
10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<별지 제6호서식>
11. 사회적기업 기본과정,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('26년 지침개정)
 - * 사회적기업 온라인 교육플랫폼(edu.seis.or.kr)의 (예비)사회적기업 필수과정
 - * 지방자치단체,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「사회적기업 아카데미」의 수료증 대체 가능(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)
 - *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.
12. 대표자 이력서 <별지 제7호서식>
13.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(해당 기업만)
 - ☞ 신청서류중 ①4대보험 가입자 명부, ②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, ③유급근로자 명부, ④사업자등록증, ⑤재무제표, ⑥교육 수료증 등은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제출(☞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)

9

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

○ 준수사항

- 지정요건 유지
-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(지정 후 1년 이내)
- 사업보고서 제출 (매년 5월말까지)
 - * 미제출시 불이익 : 시정지시 미이행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지정취소 의뢰,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
-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

○ 지정취소

-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*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
-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
 - *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가율 100~500%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.
-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

- 참여기업은 반드시 온라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(www.seis.or.kr)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접수마감일까지 완료된 서류만 인정합니다.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**사실과 일치**하여야 하며,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**객관적으로 입증**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, **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**
-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, **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**
-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2026년도 사회적 기업 인증(지정)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에 따릅니다.

○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(컨설팅 등)은 관할 군·구, 지원센터에 문의 - (상담 및 접수) 군·구 담당부서

군 · 구	담당부서	전화번호	팩스번호	주 소
강 화 군	일자리경제과	032-930-3617	032-930-3639	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
옹 진 군	경제정책과	032-899-2882	032-899-2519	미추홀구 매소홀로 120(용현동)
제물포구	일자리경제과	032-745-3133	032-745-3119	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80(관동1가)
영 종 구	경제지원과	032-760-7373	032-760-7369	영종구 하늘중앙로 201(중산동)
미추홀구	일자리정책과	032-880-7942	032-880-4871	미추홀구 독정리로 95(송의동)
연 수 구	일자리정책과	032-749-7825	032-749-8469	연수구 원인재로 115(동춘동)
남 동 구	일자리정책과	032-453-2492	032-453-5778	남동구 소래로 645(만수동)
부 평 구	일자리창출과	032-509-7486	032-509-7696	부평구 수변로 56, 부평사회적경제 마을센터 1층(부개동)
계 양 구	일자리정책과	032-450-6778	032-551-5746	계양구 계산새로 88(계산동)
서 해 구	기업일자리정책과	032-718-1885	032-560-2732	서해구 염곡로 464번길 15, 8층(가정동)
검 단 구	기업일자리정책과	032-726-6744	032-726-7949	검단구 독정로 125번길 12, 3층(당하동)

- (상담 및 컨설팅) 지원센터

기 관 명	전화번호	팩스번호	주 소
인 천 광 역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	032-725-3305, 9	032-725-3320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, JST 13층

○ (지정문의)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☎ 032-440-4973, fax 032-440-8699

○ (인터넷 시스템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
사이트명	연 락 처
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www.seis.or.kr	1661 - 4006